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. 9. 18 선고 2017가단10512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 
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태욱

피 고 1. B

2. C마을회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찬

변론 종결 2018. 8. 28

판결 선고 2018. 9. 18

## 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포항시 남구 D 답 371㎡ 에 관하여,

(1)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. 11. 3. 접수 제1130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
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,

(2) 피고 C마을회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. 1. 24. 접수 제57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 하고,나, 피고 C마을회는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 2017. 11. 7.부터 위 가.항 기재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1,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○ 원고는 2015. 9. 15. 피고 C마을회 이장인 피고 B과 사이에,마을회관 건축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 C마을회에게 자신 소유의 포항시 남구 D 답 371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매대금 52,000,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피고 C마을회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,2015. 9. 15.부터 2년간은 무상사용을 허락하되,위기간 동안 피고 C마을회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(이하 '이 사건 협약'이라 한다)을체결하였다.

○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. 11. 3. 접수 제113061호로 자신 앞으로, 피고 C마을회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. 1. 24. 접수 제5780호로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○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피고 C마을회의 마을회관이 건축되었고, 이를 피고 C마을회가 점유,사용하고 있다.

O 피고 C마을회는 2015. 9. 15.부터 2년이 지난 2017. 9. 14.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협약 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, 이에 원고는 2017. 9. 25.경 피고 C마을회에게 2017. 9. 30.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,미지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.

O 피고 B은 이 사건 협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고소하였으나,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,오히려 피고 B이 무고죄로기소되었다.

O 한편,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2017. 10. 1.부터 월 121,500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3, 6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임료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 C마을회가 이 사건 협약에 정해진 지급기한인 2017. 9.14.까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협약은 원고의 이 사건 소장송달로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그렇다면 원고에게,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마을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,피고 B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,피고 C마을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,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. 11. 7.(피고 C마을회에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이다)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121,5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,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나상훈